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26년 데스크톱 PC 도입사업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 정보체계관리단장 및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장비를 구성하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치, 부품, 부착물, 케이블, 자재 및 소프트웨어(SW) 등 일체의 품목을 말한다.
2. "정상가동"이라 함은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이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게 작동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하자"라 함은 검수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불량, 장비 및 장치 고장, 소프트웨어(SW)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 오류, 납품완료 시점의 운용환경과 유사한 환경 하에서 현저한 성능저하(처리속도, 용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수요자의 업무분장)

- ① 육군 정보체계관리단장은 국군중앙(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육군 정보체계관리단장은 본 계약에 따른 사업 시행의 총괄(검사, 납품 및 설치 등),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의 확인 및 육군본부 재무관에 대한 대금지급의 의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육군본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계약문서)

-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2. 입찰 공고문
 3. 입찰 유의서
 4. 제안요청서
 5. 제안서
 6. 사업수행계획서
 7.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본 계약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한다.
- ⑤ 기타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 및 제1항 각 호의 문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 각 호의 문서가 우선한다.
-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사업관리)

-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 보고회를 실시한다.
- ② 공급자는 추진일정, 납품·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 ③ 수요자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는 본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수요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공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기간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일정복구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일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본 계약이행 기간 중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매주 목요일(휴무일 경우 그다음 근무일) 16:00까지 주간 사업 진행상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수요자가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업진행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본 사업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본 사업 계약과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 ⑦ 공급자는 본 계약추진 일정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의 승인이 공급자의 지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⑧ 공급자는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 ① 공급자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현재 공급자에 소속된 자 중, 공급자에게 소속된 상태로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데스크톱 PC 도입 사업관리자(PM) 경력이 있는 자를 사업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투입 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이하 "이력서등"이라고 한다)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출된 이력서등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원의 투입을 승인한다.
- ③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도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교체투입인력의 이력서등 및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공급자는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공급자의 사정으로 투입인원을 교체하여

야 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사유서, 교체 투입인력의 이력서 등 및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투입인력은 본 계약이 이행되는 기간 동안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하여 본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⑦ 공급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공급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검사)

- ①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의 규격, 품질 및 성능이 제5조에 따른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기일로부터 5근무일 전까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요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검사 요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의 검사를 위해 수요자 또는 수요자의 납품받는 부대에 계약목적물을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로부터 이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 내용에 따른 규격,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공급자는 보완을 완료하고 수요자 또는 제1항의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 ⑥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9조(분할납품)

- ① 당사자 일방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여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분할납품에 합의한 경우,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을 분할납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품 합의가 공급자의 지체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제10조(납품지체의 통지)

- ① 공급자는 납품기일까지 이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그 사

실을 지체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통지가 공급자의 지체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 ② 납품기일 전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될 것이 예상되어 납품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한 수정계약 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체사유서

2.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기타 사실 확인 및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 ③ 공급자가 납품기일 경과 후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이행지체에 대하여 지체 상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한 지체상금 면제원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검수 및 납품)

-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

1. 납품되는 장비(부품 포함)가 계약체결연도('26년도)에 생산된 신제품임을 보증

2. 제5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물품

3. 납품되는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

- ② 공급자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을 납품기일까지 수요자가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인도(계약목적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한 후 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인도 예정일시를 해당일로부터 2근무일 이전까지 수요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납품받는 부대의 물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④ 계약문서상의 납품기일의 시한은 납품받는 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전까지(08:30 ~ 17:00)로 한다.

- ⑤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새로 설치된 장비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상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설치 자재를 철거한 후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사업수행결과, 납품·설치 확인서, 각종 라이선스 등을 포함한 검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 ⑥ 수요자는 공급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제1항의 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다만, 검수를 요청받은 당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검수에서 공급자의 계약 이행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⑧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7항에 따른 수요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해당 시정조치 완료 후 수요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재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을 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 ⑨ 제6항에 따른 재검수 기간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때, 기산일은 수요자가 공급자로부터 시정조치 완료 통지 또는 재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 한다.
- ⑩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검수에 합격하지 못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수요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⑪ 공급자의 납품 의무는 검수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을 수요자가 인수하여 검수 및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수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 ⑫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본 조에 따른 검수는 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⑬ 본 조에 따른 공급자의 납품 완료 전까지 수요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⑭ 공급자는 납품하는 장비와 관련된 모든 매뉴얼을 한국어로 작성하여 납품하는 각 부대의 관리자에게 납품수량과 동일한 수량을 납품과 동시에 무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⑮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되는 장비(SW포함)가 기존 운용환경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납품·설치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⑯ 공급자는 납품되는 제품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수요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⑰ 공급자는 검수 완료 후 장비가 설치 및 정상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정계약의 체결)

- ①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수정계약 요청 사유 및 관련 근거 문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③ 계약문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대금지급 및 지급)

- ①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리스계약방식에 의하며, 수요자가 제3자인 대금지급업체(이하 "리스계약업체"라고 한다)와 별도로 체결하는 리스계약 중 공급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수요자는 납품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공급자에게 리스계약업체의 상호, 주소, 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계약 체결 지연 등 수요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공급자는 검수에 합격하여 체계의 납품을 완료하면 수요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대금 청구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리스계약업체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본 항의 기한을 따른다.
- ③ 본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에게 해당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급자가 제3항의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계좌 변경 시,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에게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는 변경 은행계좌의 명의를 공급자의 명義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하고, 변경이 승인된 후 공급자는 변경된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공급자가 제3항에 따른 계좌변경을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수요자 및 리스계약업체가 변경 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⑥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도급)

- ①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②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과 표준하도급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③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관련 사항 및 근거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 등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 ④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 손해는 공급자 및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 ⑤ 공급자가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자는 하도급 계획서, 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공급자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다만, 본 계약체결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달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내역을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공급자가 본 조의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수요자의 협조 의무)

공급자와 공급자의 하수급인이 본 계약이행을 위해 수요자 시설에 출입하거나 수요자의 자료열람 등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하자보수 등)

- ① 공급자는 물품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공급자의 사유로 본 사업이 지연되어 납품이 계약연도 다음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요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라도 여전히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 ③ 수요자는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급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해당물품의 하자보수, 대체납품 등을 통지받은 때에는 공급자는 신고받은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 및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 ⑤ 공급자는 제11조(검수 및 납품)와는 별도로 납품·설치한 장비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계약 내용대로 작동할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특히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은 하자발생일 기준 당해년도에 생산되어 다른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신제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⑥ 수요자는 검사·검수 이후라도 납품·설치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보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⑦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30일 이내에 동일 물품에 2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 시 즉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동일 품질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⑧ 공급자는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예비부품을 전체 계약목적물 부품 수량 대비 5% 이상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예비부품의 단가, 수량, 보관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예비부품 확보계획을 세워야 하며, 예비부품의 포장에 「'26년 데스크톱 PC 도입사업 예비부품」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목적물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⑩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 계약체결 지연 시 수요자의 요청에 의거 정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의 정비활동에 대한 대가는 차기 유지보수 계약의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 ⑪ 본 조의 조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⑫ 대체납품된 물품에 대하여는 대체납품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한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① 공급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기일까지 수요자에게 납부하고, 대금 청구 시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와 하자보수지원계획서(장애복구대책, 콜센터 운영 및 지원 인력, 예비부품(정비대체장비 포함) 확보 및 업데이트 지원계획을 포함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부당이득금의 환수)

-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 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0조(해제 또는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요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자의 시정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4. 공급자 측 관계자가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또는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보안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공급자가 수요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급자가 안전·보건 확보조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의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도달이 어려울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지체상금)

- 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0.7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전속적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보안사항)

- ①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근로자, 하수급인 등(이하 본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공급자 및 관계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하거나 수요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정보 등(이하 “군사 관련 사항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공급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 관련 사항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요자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군사 관련 사항등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⑤ 공급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원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지시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인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⑥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⑦ 공급자 및 관계자는 본 계약을 위해 반입하는 정보체계,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반입해야 한다.
- ⑧ 전항에 의해 반입된 정보체계,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본 사업 종료 후 수요자의 반출승인을 얻은 후 반출해야 한다. 공급자 및 관계자가 본 계약 이행에 사용한 HDD,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 매체는 수요자가 '완전소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완전히 삭제한 후에만 반출할 수 있다.
- ⑨ 공급자 및 관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같은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공급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5. 본 계약 관련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제63조의 대외비, 제200조의2의 비공개 업무자료
 -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⑩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본 조에서 정한 보안유지의무를 준

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⑪ 본 조에 의한 보안관련 의무는 계약이 종료·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 ⑫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품질보증)

- ① 공급자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30조에서 제134조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훈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 계획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형상변경)

공급자는 본 계약수행 간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훈령 제139조에 따라 변경요청서(같은 훈령 별지 제33호 서식)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제조물 책임)

- ① 계약목적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한 계약목적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고, 납품 시 각 품목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 ③ 공급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청렴계약 이행 준수)

-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 ① 공급자는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② 공급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같은 훈령 별지 제23호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 ③ 공급자가 제2항의 확인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전시 계약관리)

- ①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급자는 용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